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. 10. 22 선고 2024가단57455 판결 [건물명도등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0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나. 1,897,920원 및 2024. 2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,100,000원의
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

판사 신교식

별지